

제3023호
2023. 9. 13.

발행인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길성
편집인 : 홍보담당관 주재봉
전화 : 3396-4955
(http://www.junggu.seoul.kr)

자치법규

선	기관 의 장
람	

구 보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2023-833호 :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 고 시
제2023-51호 : 을지로3가구역 제9지구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9
- 공 고
제2023-800호 : 장기보관자동차 매각 및 폐차 공매 공고 11
제2023-830호 : 대부업체 소재 확인 공시송달 공고 15
제2023-838호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6
제2023-839호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9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8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3-833호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 이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9월 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납세자의 혼란 방지 및 자치구간 제도의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맞춰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고충민원 관련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기준 수정(제6조)
- 고충민원 인용조항 수정 및 제외 대상 수정(제7조)
- 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절차 수정(제12조)
- 제22조(시행규칙)를 제26조로 조문번호 변경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결정, 세무조사 연기신청 및 결정 규정 신설
 - 제22조(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 제23조(연장신청에 대한 결정), 제24조(세무조사 연기신청), 제25조(연기신청에 대한 결정)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5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	--	--	--	--	--	--	--	--	--	--	--	--	--	--	--	--	--	--	--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감사담당관, 주소: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감사담당관, 전화: 02-3396-8021, 팩스 : 02-3396-9017~8, email : nirval@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 1.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500만원”을 “100만원”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 단서 중 “법 제88조제4항제3호”를 “법 제88조제5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88조에 따른 ”을 “「지방세기본법」등에 따른 불복 및”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2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2회째 신청에 대해서는 처리 제외됨을 통지하고, 3회째부터는 통지 없이 종결한다.”를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회”를 “3회”로 한다.

제22조를 제26조로 하고,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 ① 조사를 담당하는 세무부서장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려면 납세자보호관에게 조사기간 종료 3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법칙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 포함)는 조사기간 연장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3조(연장신청에 대한 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제22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

- 1. 세무조사 연장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 2. 세무조사 연장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제24조(세무조사 연기신청) 세무조사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25조(연기신청에 대한 결정)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24조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 1.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 2.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 신청인이 요구한 기간을 단축하여 승인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p> <p>① (생략)</p> <p>② 납세자보호관은 영 제51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건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법 제147조 및「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줄 것을 요청 할 수 있다.</p> <p>1.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처분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안건</p> <p>2. 납세자보호관이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안건</p>	<p>제6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p> <p>-----</p> <p>-----</p> <p>-----1. -----</p> <p>-----</p> <p>-----100만원-----</p> <p>2. -----</p> <p>-----</p>

현 행	개 정 안
<p>제7조(고충민원의 대상) ① (생략)</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p> <p>1. (생략)</p> <p>2. 법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다만, 법 제88조제4항제3호에 따른 결정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p> <p>3. 법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p>	<p>제7조(고충민원의 대상)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1. (현행과 같음)</p> <p>2. -----</p> <p>-----<u>법 제88조제5항제3호</u>-----</p> <p>-----</p> <p>3.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 및 -----</p> <p>-----</p>
<p>제12조(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① 납세자 보호관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2회째 신청에 대해서는 처리 제외됨을 통지하고, 3회째부터는 통지 없이 종결한다.</p>	<p>제12조(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① -----</p> <p>-----</p> <p><u>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u></p>

현 행	개 정 안
<p>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2회 이상 신청된 고충민원이라 하더라도 신청의 주된 이유가 당초 신청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 또는 사유가 있거나 당초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된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한다</p>	<p>② ----- 3회 ----- ----- ----- ----- -----.</p>
<p><신 설></p>	<p>제22조(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 ① 조사를 담당하는 세무부서장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려면 납세자보호관에게 조사기간 종료 3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법칙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 포함)는 조사기간 연장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p>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23조(연장신청에 대한 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제22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 1. 세무조사 연장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세무조사 연장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 승인</p>
<p><신 설></p>	<p>제24조(세무조사 연기신청) 세무조사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제25조(연기신청에 대한 결정)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24조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 승인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 신청인이 요구한 기간을 단축하여 승인할 수 있다.</p>
<p>제22조 (생 략)</p>	<p>제26조 (현행 제22조와 같음)</p>

고 시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3-51호

을지로3가구역 제9지구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10 (2016.10.06.)호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31 (2021.05.20.)호로 정비계획결정(변경),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22-122(2022.12.21.)호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을지로3가구역 제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7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1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을지로3가구역 제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가 5-1번지 일대
 - 면 적 : 1,976.0㎡ (대지 1,619.5㎡, 정비기반시설 356.5㎡)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주)을지로나인피에프브이 대표이사 김강석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을곡로 88 삼환빌딩 15층
-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23년 9월 5일
- 5.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폐율 (%)	연면적 (㎡)	용적률 (%)	층 수 (층)	높이 (m)	용 도
1,619.5	971.5813	59.99	25,669.5154	1,027.65	지상21/ 지하8	69.9	공동주택

나.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1) 분양대상자 및 분양면적

분양대상자		분양예정지의 대지 및 건물			비 고
성 명	주 소	토지(㎡)	건물(㎡)	용도	
(주)을지로나인피에프브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을곡로 88 삼환빌딩 15층	628.3839	9,960.0429	생활형 숙박시설 근생시설	

2) 보류지 시설 : 토지 8,4154㎡, 건물 133,3876㎡ (도시형생활주택, 근생시설)

3) 체비지 시설 : 토지 982.7007㎡, 건물 15,576.0849㎡ (도시형생활주택, 근생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다.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종류	규모(㎡)	시행자	부담자 및 부담내용	관리청	종류	규모(㎡)
도로(중로3-3, 소로1-b)	112.2	(주)을지로나인피에프브이	시행자부담설치후 무상귀속	서울특별시 중구	-	-
공원	244.3					
계	356.5					

라.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 관리처분인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

6. 기타 관계도서는 생략 (중구청 도심정비과에 비치 ☎02-3396-5772)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3-800호

장기보관자동차 매각 및 폐차 판매 공고

우리구 불법 및 부정주차 단속(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34조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5조제2항 규정)에 의거 견인되어 중구견인차량 보관소에 1개월 이상 보관중인 별첨 차량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35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14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 매각처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다 음 -----

1. 판매공고일정

- 가) 입찰신청 및 보증금 납부기간 : 2023년 9월 13일 09:00 ~ 2023년 9월 27일 18:00
※ 입찰하고자 하는 분은 이 시간까지 판매보증금을 입금하여야 하며, 미 입금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에서 제외됩니다.
나) 입찰참여 마감일시 : 2023년 09월 27일 18:00
다) 입찰결과 발표일시 : 2023년 10월 02일 14:00 (오토마트 홈페이지 결과조회)
라) 낙찰자 대금납부 : 2023년 10월 02일 14:00부터 2023년 10월 09일 14:00까지

2. 매각대상 차량 : 1대(차량조회 목록참조)

3. 차량인도 절차

매각 결정된 자동차는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계약체결 후 해당 자동차등록기관에舊자동차 번호판을 반환하고 이전등록을 완료하여야 자동차를 인도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전국번호판은 별도 수령없이 등록가능함)

4. 판매입찰 방법 : 일반전자상거래에 의한 공개경쟁 입찰

(주) 오토마트(www.automart.co.kr)

5. 입찰신청 및 입찰참여 방법

- 가) (주)오토마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찰에 참가하되, 입찰등록 시 개인정보 입력 및 비밀번호 부여로 본인만 신청가능하며, 반드시 주민등록상 성명과 주민등록상 주소로 등록하여야 합니다.(단,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임)
나) 마감기간 내에 입찰신청을 해야 하며 판매보증금은 예정가액의 10/100 이상을 입금하여야 하고(기한 내 미입금시 입찰 참가자격 제외됨), 입금자 명의로 입찰등록자명의로는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 (타인명의 입금 시 입찰 참여자격을 취소함)
다) 선택차량에 대한 입찰권한은 아래 계좌에 판매보증금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미납 시 또는 타인명의 입금시 입찰참가자격을 취소함.
※ 입금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302-864648 예금주: 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
※ 계약(낙찰잔금입금)계좌 : 상동
라) 유찰된 판매보증금은 이자가산 없이 낙찰자 발표 후 7일 이내(토, 일요일 제외)계좌번호로 환불처리 합니다.
※ 반환 받으실 계좌는 반드시 입금자 계좌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된 자의 계약보증금은 판매보증금으로 전환됩니다.
바) 국세징수법 제66조(매수인의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을 할 수 없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에 의거하여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판매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6. 낙찰자 결정기준

- 가) 입찰가격이 매각예정가액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입찰가액이 최고액인자
나) 국세징수법 제66조 및 동법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제한된 자가 아닌자
다) 최고 입찰금액이 2인 이상 동일한 경우, 입찰가의 선 제출자를 낙찰자로 결정
라) 입찰자는 입찰권한이 있는 자로서 2인 이상이어야 유효함(단독입찰불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제19조 규정 적용)

7. 대금납부기한 :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 낙찰자는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잔금을 완납하여야 하고 이를 불이행 할 경우에는 매각결정을 취소 후 판매보증금은 체납처분비로 충당됩니다.

8. 차량인수 및 하자책임

- 가) 낙찰자는 잔금완납 후, 14일 이내에 명의 이전 후 차량을 인수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 할 경우 매각 결정을 취소합니다. 차량 미인수시 판매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판매보증금외 납부잔금은 반환)

- 나) 낙찰자가 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록을 마친 후 자동차를 인수하면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합니다.
- 다) 낙찰된 차량의 권리에전에 따른 제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 라) 낙찰된 차량에 대한 제3자의 권리침해, 공무상의 하자나 물건의 성능 규제, 규격, 품질 등의 상이에 대하여 우리구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입찰자 본인의 책임 하에 공부 등의 열람, 현물확인 등을 통해 확인하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 ※ 중구견인차량보관소 : 서울 중구 손기정로 101 손기정체육공원공영주차장
 - ※ 답사시간 : AM 09:00 ~ PM 18:00 (월~금) 공휴일 제외

9. 공매중지

- ※ 낙찰자가 명의이전 전까지 원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제비용을 모두 납부하고 권리를 주장할 경우 낙찰 결과와 관계없이 공매가 취소되며, 자동차는 원 소유주에게 인도함.

10. 기타사항

- 가) 본 공고상의 내용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 나) 정기검사 기간을 경과한 자동차를 낙찰 받은 경우에는 이전등록 촉탁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검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과태료 등을 부담하게 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자동차등록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매각차량 중 번호판이 없는 차량은 낙찰자가 영치부서에서 번호판을 직접 수령 하셔야 합니다.
- 라) 공개매각에 따른 매각불능 차량에 대하여는 폐차처리 합니다.
- 마) 명의 이전 후 1개월이내 차량을 인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차량을 공단이 임의처분 합니다.
- 바) 계약 체결후 소유권 이전은 행정상 며칠이 걸릴 수 있으며, 낙찰자가 이전 등록을 완료하고 자동차등록증 (명의 이전 완료분) 및 신분증을 제시해야 자동차를 인수할수 있음.
- 사) 기타 이 공고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중구견인차량보관소(☎ 02-2280-837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대 상 차 량

연번	차량번호	차명	차종	보관일시	소유자명	소유자주소
1	57무0291	아반떼 쿠페	승용 중형	2022-10-10 13:25	JI ZESHANG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금암6길 37, 102호(금암동)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3-830호

대부업체 소재 확인 공시송달 공고

우리 구에 등록된 대부업체 중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업체에 대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9. 13.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공 고 명 : 대부업체 소재 확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 주소
2022-서울중구-0024(대부중개업)	짱돌대부중개	이*굴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450, 신영빌딩 6층 1호

3. 공고기간 : 2023. 9. 13. ~ 10. 15.(32일간)

4. 공고내용

가. 위 대부업체의 사무소 소재지 불명으로 소재지 확인을 위한 공고를 하오니 공고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소재 확인 통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위 기간까지 통지가 없을 경우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6호에 의거 **대부업 등록이 취소**되며 같은 법 제4조 제1항제7호에 따라 **향후 5년간 대부(중개)업 등록이 제한**됩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산업과(☎02-3396-56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3-838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65호(2006.10.26.)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107호(2009.03.19.)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119호(2014.03.2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1-40호(2021.04.07.)로 사업시행계획인가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관계 서류를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의견 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 본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은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람 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9월 1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공람요지

- 사업개요
 - 사업명칭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가 202일대
 - 면 적 : 5,512.9㎡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더센터시티제이차주식회사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12층(삼성동, 파르나스타워)
 - 사업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72개월
 - 건축계획 : 지하8층/지상20층, 연면적 58,183.62㎡, 업무시설 등

나. 변경사항 : 사업시행자 변경 등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사 업 자	더센터시티제이차주식회사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식회사
대 표 자	박 래 영	이 국 형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12층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7층 (삼성동, 섬유센터)

다. 공람개요

- 1) 공람기간 : 2023.09.13.~2023.09.27.(14일간)
- 2) 공람장소 : 중구청 도심정비과
- 3) 관계서류 : 공람장소에 비치

라. 기타사항

-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그 밖의 정비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는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는 본 공고내용을 개별통지하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합니다. 아울러, 공람서류는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관계 서류이며, 공람기간 중에 제출되는 의견 및 관계 법령 검토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3-839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9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65호(2006.10.26.)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107호(2009.03.19.)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119호(2014.03.2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1-41호(2021.04.07.)로 사업시행계획인가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9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관계 서류를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의견 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 본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은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람 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9월 1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9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공람요지

- 사업개요
 - 사업명칭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9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가 240-1번지 일대
 - 면 적 : 4,179.1㎡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더센터시티제이차주식회사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12층(삼성동, 파르나스타워)
 - 사업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72개월
 - 건축개요 : 지하9층/지상26층, 연면적 46,323.59㎡, 공동주택

나. 변경사항 : 사업시행자 변경 등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사 업 자	더센터시티제이차주식회사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
대 표 자	박 래 영	이 승 수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12층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다. 공람개요

- 1) 공람기간 : 2023.09.13.~2023.09.27.(14일간)
- 2) 공람장소 : 중구청 도심정비과
- 3) 관계서류 : 공람장소에 비치

라. 기타사항

-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그 밖의 정비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는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는 본 공고내용을 개별통지하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합니다. 아울러, 공람서류는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관계 서류이며, 공람기간 중에 제출되는 의견 및 관계 법령 검토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